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6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5)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4)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2)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6)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4)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4)

상정된 안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5) 2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4) 2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2) 2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6) 2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4) 2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4) 2

(16시17분 개의)

○소위원장 강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으로 부족한 져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견례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전체 상임위에서 상견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되 의결은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5)
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4)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2)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6)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4)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4)

(16시19분)

○소위원장 강준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30조에 따라서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에 적용되는 요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이 현행법에 따르면 24년 8월 31일로 종료가 되는데 개정안은 아래 기한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강민국 의원안은 27년 12월 31일까지, 김용만 의원안은 27년 8월 31일까지, 이강일 의원안은 29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율의 한도는 업권별 구분 없이 법에서 예금 잔액의 0.5%로 규정되어 있고요 이 한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업권별로 실제 적용 요율을 달리 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일몰될 경우에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서 현행 요율보다 낮은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규정이 일몰될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약 7751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 등 안정적 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요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몰 규정을 연장할 경우에는 각 개정안별로 존속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결정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존속기한 결정 시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존속기한이 26년 12월 31일이고 그다음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위한 부보금융회사의 특별기여금 존속기한이 27년 연말입니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해서 적정 기한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한도는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서 1998년도에 마련됐고 다섯 차례 일몰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업권별 적립규모가 상이함에도 전체 금융업권별로 법률에서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개정안에 따른 존속기한 이후에는 업권별 현실을 반영해서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추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한연장 관련해서는 업권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2027년 이후에 적정 예보료율로 인상하고 예보료율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업권별 차등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통한도 방식으로 일단 일몰 연장을 하고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업권별 한도 차등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련해서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정부 측에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일몰될 경우에 연간 7751억 원 감소 예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박상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9월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연간이니까 1년간 개정을 안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9월이라도 바로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전체회의는 매우 중요한 예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 권익위의 문제 그다음에 이른바 티메프 사태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되어 논란이 된 광복절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회의를 중단하고 1소위를 열어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물론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법안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예산 현안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법안을 논의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9월에 통과되면 어떤 현상을,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9월 30일 이전에 통과가 되면, 지금 강민국 의원님 안 보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각 해당 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9월 30일 전에 전부 발효가 되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도 손실 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9월에 통과가 되면 손실이 있는데요, 9월에 본회의랑 법사위가 예정이 좀 어려워서, 사실 10월에 통과되면 은행권에서 412억 원을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9월에 본회의가 잡힐 예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8월에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해요. 일정은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법안의 영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기 개정안 내용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급 적용에 대해서 9월 30일 전에, 영향을 미칠……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없다라는 게 어디 기재돼 있습니까? 시급성만 얘기하시는데 어디에 기재돼 있나요, 검토보고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6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론 및 검토보고 등 요지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왜 그 부분은 보고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료 위원들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가요?

아까도 오전에 이 법안을 논의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동료 위원님들이 많으셨어요.

왜 수석전문위원은 그 문제를 보고하지 않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통상적으로……

○**박상혁 위원** 마치 이것 오늘 안 하면 난리날 것처럼 지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한도와 관련되어서 문제인데요.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연장하고서 다시 용역을 하신다는 취지잖아요?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전에는 용역이 한 번도 없었나요? 제가 처음 정무위를 하는 거라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이전에도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렸었는데 기준에 구조조정 비용을 상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2027년 말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고 그 전에 적정 예보율을 다시 계산을 해서 2027년 이후에 새로 진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저희가, 여기 업권 차등 얘기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합쳐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쉽지 않은데 전에도 용역을 해서 안은 갖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실 2021년 이후에 국회에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2021년 이후에 민관합동TF와 또 연구용역을 실제로 한 상황이고요, 다섯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했던 안은 향후에 한 4~8bp 정도 올려야 된다, 그 정도 안을 저희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그런 용역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이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있고 그 내용으로 한다면 조금 전의 그런 내용까지 반영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도 있는 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양당에서 또 논의하신 바가 있는 부분을 참고하고 고민하더라도, 하는 부분이 좀 매우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참고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해부터 소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진행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오늘 법안소위를 전체회의 중에 갑자기 소집해서 하게 되니까 아마 불편하실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정무 1소위는 오늘 하기로 일정을 협의했다가 결산 전체회의를 한다고 아마 일정을 변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은 일몰 시한이 임박해 있어서 예금보험료율 한도 0.5% 연장하는 취지로 이것은 진성준 의장님하고 8월 임시회 때 이견 없이 통과를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해서 이번 8월 임시회 때 통과하기로 합의를 했던 법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안1소위가 수요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수요일 날 이 법안을 처리하면 당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불편하시더라도 부득이 이렇게 빨리 중간에 소집해서 논의하게 됐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안 자체는 민생과 직결된 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닌가 해서 합의 처리하는 법안 안에 넣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상혁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양당 간사가 사실 오늘 법안1소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려고 하다가 또 민주당 측에서 현안질의 또는 여러 가지 때문에 일정이 좀 변경이 됐는데……

사실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고금리로 이자 장사하고 서민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게 통과 안 돼서 은행에 300억, 400억 더 보태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우리가 예금자 보호에 좀 더…… 예금자 보호라는 게 결국, 전부 다 우리가 예금통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저는 오늘 법안1소위에서

통과되어서 하고, 다음에 저도 2소위 위원장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절차에 맞게끔—시급성이 있지만—그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예보 쪽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유대일** 예.

○**유동수 위원** 예보 보험료가 종전으로 환원 시에 현행 예보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환원될 때 예보율을 가지고 예보에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까?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유대일** 지금 당장 운영하기 어렵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7800억 정도가, 1년으로 따지면 한 7751억 원이……

○**유동수 위원** 7751억 원이 감소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유대일**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걸 보면 은행하고 금투하고 저축은행 부분의 특별계정에서 감액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합이 7751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유대일** 예.

○**유동수 위원** 그 금액이 어려냐 그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 와 계시고 금융위에서 와 계신데 우리가 이 요율이 맞냐 안 맞냐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당위성 가지고 ‘부칙에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줄어들 때 예보에서 이 줄어든 예금보험료를 가지고 지금 예보 사정이 어떻다’.

예보라는 게 결국은 그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거나 문제가 생길 때 백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요율 가지고 좀 어렵다 이 얘기가 선행돼야지, 우리가 종전으로 환원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시행한 대로 부칙을 연장합시다 이렇게 논의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유대일** 예,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 얘기를 좀 해 달라 그거예요.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유대일** 지금 저희들이 예금보험료의……

○**유동수 위원** 일어나셔서 성함을 대시고 예보의 사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유대일**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유대일입니다.

지금 저희 예금보험료의 45%가 저축은행 사태 때 생겨난 구조조정 특별계정 부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800억 원이 덜 들어오게 되면 부채 상환 기간이 늦어지게 되고 안 그래도 저축은행의 계정이 적자 상황인데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과거 저축은행이 문제됐던 것들에 대해서 예보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지금 계속 상환하고 있는데—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저축은행에 관한 얘기고, 그렇지요?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유대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이나 저희……

○**유동수 위원** 그 현황을, 사실은 이렇게 1소위가 열리면 그런 내용을 미리 자료 배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유대일** 예.

○**유동수 위원** 이렇게 그냥 너무 당연시하지 말고, 급하게 이 법안1소위가 잡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예보에서 철저히 만들어서 ‘예보의 지금 현 상황이 이러니까 예보료를 협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유대일** 예.

○**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저도 지금 이 법률안 검토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실제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어서 연장하는 법안이잖아요. 분명히 3년 전에 이야기할 때도 관련 내용이 비슷하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연장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후에 똑같은 이유로 안정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법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 금융위뿐만 아니라 예보 여기에서 심각한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여야 간에 의견이 커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분명히 오늘이 일몰시한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전에 충분히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고……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3년 후에 또 연장한다고 하면 누가 그건 책임을 집니까? 이게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관련 기관들에서 너무 뻔하게 너무 당연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관련된 데이터들 제대로 분석돼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김동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지난번 일몰 연장이 될 때 이게 계속 일몰 연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적정 예보료율이라든지 또 적정 보호 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라, 단순하게 연장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가지고 연구용역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를 해서 작년 21대 국회 국감 때 그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예보료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4~8bp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예보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을 위해서 예보료 중에 45%가 예금보험기금으로 못 들어가고 저축은행의 부채를 갚기 위한 그 계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서 예보료 외에 금융권이 특별기여금이라 그래서 예금의 0.1%를 또 예보기금채권상환기금에다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계정이 종료되는 2026년 그다음 특별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는 2027년까지는 일단은 현 상태의 예보료율을 그냥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보고 다음에 예보료율 일몰을 그때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그런 배경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연장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오래된 이야기고 그러면 용역이 이번에 한 번 돼 가지고 실제로 지난번에 보고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3년 연장하는 오늘 이 안건이 나온 겁니까? 그 전에는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김동환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섯 차례 연장이 됐었는데요.

○한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섯 차례 연장할 때마다 관련된 그 연장의 이유가 계속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가 나와 가지고 다른 이유로 또 연장하고 그러면 3년 후에는 실제로 이 관련돼서 또 다른 이유가 안 나오겠어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나 관련된 내용이 반복되지 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강준현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시지요. 예금보험공사 부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이 당위성 관련해서 자료 말씀하셨거든요.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유대일 예,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또 한창민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연장의 사유라든가 이유라든가 또 용역도 맡기셨다고 하니까 그 관련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시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하나만 추가 말씀 드리면 법안에서는 한도가 0.5%거든요. 그래서 한도를 정하는 법입니다. 지금 정확한 얼마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연장을 하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그냥 계속 연장을 시켜 주셔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반대한다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예금보험공사나 국장님이나 각각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김동환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유동수 위원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법안소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융위가 일하는 방식을 많이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8월 말까지 한시법이고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원실에 와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한데 금융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개별 위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시정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내일도 2소위가 있고 또 수요일 날 1소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심사할

법안들이 있거든요. 관련돼서 금융위가 됐든 소관 부처가 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지요. 사전에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사실 저희가 법안 관련해서 설명은 많이 다녔는데 아마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많은 소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약간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해서 전달이 잘 안 되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어찌 됐든 보좌진들한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나 또 예금보험공사나 하여튼 각 소관 부처들이 전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 관련해서 의결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위원장님, 그러면 존속기한을……

○**소위원장 강준현** 27년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강민국 의원안과 같이 27년 12월 31일로……

○**소위원장 강준현** 강민국 의원님과 김용만 의원님 안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장 강준현** 강민국 의원님 안, 2027년 12월 31일.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부대의견을 첨부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안은 저희가 전문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했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강준현**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금융위원회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 4개월 전까지 금융 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강준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있는데요. 강민국 의원안과 같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분기부터 개정된 요율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야지만, 이게 사실 저희가 8월에 통과되지만 시행은 9월에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공백 없이 분담 요율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칙을 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2027년 12월 31일까지, 됐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법안 관련해서 의결은 다음 안건 심사한 다음에 일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박상혁 위원** 잠깐만, 저 동의하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좀 전의 4개월은 의미가 왜 4개월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입법하는 절차를 고려했을 때요 4개월 정도, 3개월로 하면 너무

촉박하고요. 4개월 정도면, 그 안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하면 입법 절차 기간이 4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 12월 말의 4개월 전이면 8월 말까지지요, 8월 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박상혁 위원** 8월 말…… 이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지금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4개월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것 지난번에는 3개월 연장하고 6개월 단위로 보고하셨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6개월 단위로 보고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랬었지 않습니까? 저는 한 4개월은 좀 여러 가지 법안 또 그때가 정기국회—8월 말까지 보고하게 되면—물론 그 전에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통 관행으로 볼 때 8월 말까지 보고하고 9월부터 정기국회면 오히려 여러 가지 논의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것을 당겨 보는 건 어떨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개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6개월 정도로 당겨서 미리미리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장민국 위원님 어찌십니까?

○**장민국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시지요. 6개월로 하시지요.

부칙에 6개월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부대의견 6개월로 수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중에서 은행의 경우에 대출금에 대하여 연 0.06% 또는 0.07% 이상 출연하도록 출연 하한을 설정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충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출연 비율의 상한만 규정하고 하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한을 연 0.1%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그 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자는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민금융보완계정 대위변제가 증가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보충이 필요한 반면에 은행은 고신용자 위주의 상품 운용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하에서 안정적인 수

입을 얻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은행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에 대한 신용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추가적으로 분담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맨 밑에 박스를 보시면 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여신 공급을 담당하는 대부업계는 신용대출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2018년 11.8조 원의 신용대출을 공급하다가 23년 4.7조 원으로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보시면, 반면 은행권의 경우에는 23년을 볼 때 59조 2000억 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하고 있어서 20년 대비 44% 증가하고 전년 대비 6% 증가한 이자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서 은행 출연비율을 0.06%, 0.07%로 상향할 경우에는…… 현행 출연금은 0.03%인데요 986억 원이고요. 0.06으로 상향할 경우에는 1970억 원 그다음에 0.07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2298억 원을 출연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개정안과 관련해서 출연비율의 하한을 새로 설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출연비율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부담금의 부과요율의 하한을 이미 설정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출연비율 하한을 설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소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이 부담하는 수준과 그 방식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출연요율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경우 비용 전가 등에 따라 여타 일반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산업 업권 간 형평성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타 금융권이나 여타 산업 간의 형평성 이슈입니다. 다음, 현재 정부가 이미 금융업권 출연요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번째, 법률에서 출연요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하기보다는 상한 내에서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측면이 있고 관련해서 경영 여건, 경영 상황 등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서민금융 재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수준으로 부과하는지 관련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다음은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김소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하한 설정해서 금융권의 출연비율을 높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0.06, 0.07은 현행 수준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인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현재 0.03입니다.

○**김상훈 위원** 만약에 금융권의 출연비율을 높여서 금융권에 부담을 많이 지우게 되면 금융권에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혹시 금리를 조금 인상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상훈 위원** 대출금리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돈은 자기들이 더 내더라도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반 여신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정부 측에서도 일단 출연비율을 상향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적정 수준이 한 얼마 정도라고 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현재 저희가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2025년 말까지 은행은 0.03에서 0.035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좀 갑이 있네. 일단 알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리고 숫자도 중요하지만 아마 이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김상훈 위원** 하한 설정이면 탄력적 운용이 조금 어렵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천준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실래요?

○**천준호 위원** 올해 상반기에 은행의 이자수익 총액이 약 29조, 30조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자수익이 얼만지 봤더니 59조 2000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55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증가액도 5조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율을…… 이 출연액이 어디에 쓰이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분은 이미 다 공감한다는 걸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과 900억에서 1900억으로 1000억 정도, 많이 쳐 봐야 천 한 이삼백억 정도가 더 증가되는 금액인데 이게 은행의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 너무 지나친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예대마진이 지나치게 높다 이런 비판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서민들은 고율의 이자 때문에 고통도 받고 또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서 사채시장을 전전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은행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극히 일부를 서민금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요율을 높여 주는 그런 정도의 여유도 없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행권의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은행권에서 도덕성, 예를 들면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사회에 적절하게 환원하고 적정 수익의 이자

예대마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제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원론적이지만 드립니다.

그래서 제안한 대로 예년 수준의 2배 정도에 하자는 게 0.06%, 0.07%거든요. 0.03으로 정부가 시행령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2배 정도 수준에서는, 저의 생각에는 은행권 이자수익이 연 5조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액 전체를 다 돌려놔라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감안해서 최소한 2배 정도 수준, 불과 1000억 정도 수준의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소위원장 강준현 잠깐만,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제가 정무위를 처음 맡아서 좀 궁금한 점도 있고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어렵게 논의가 되나 하는 것이 있어서 짧게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대마진율이나 은행은 어려울수록 더 많은 이익률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경제 구조가 은행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은행의 본질적인 목표가 지나치게 국민의 삶에서 벗어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이것이 또 다른 금리 인상으로의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이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또 편법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금융 당국의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이해관계나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듯한 그런 말씀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탄력적 운용 관련해서도 실제로 저는 지금 상한선 1%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서민금융을 살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은행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금융을 고민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고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0.06, 0.07 부분을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0.03이나 0.035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축소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서민금융법의 취지에는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데, 출연금을 내는 것이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출연하는 거지요? 은행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고금리여서 예대마진에 의해서 요율을 올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견딜 수 있는 게 있는데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요율이 어떻나요, 비교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은행이야 예대마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실 견딜 수 있는 또 상당히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도 모르겠고, 여신전문금융회사나 이런 데는 어때요? 출연금이, 지금 요율을 각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내고 있지요? 어떻게 내지요? 일괄적으로 내지는 않을 것 아닌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출연요율은 공통으로 0.03 똑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은행만큼, 5대 금융지주만큼 그렇게 벌리나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입니다.

그 정도 이익은 안 내는데요. 아까 출연요율은 0.03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겉는 건 대부분이 공통으로 다 겉는 부분이 많고 필요하면 차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제도거든요. 그래서 공통으로 일반적으로 겉고 잔액 대비, 지금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변제 능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법안은 은행에 관해서만 0.06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왜냐하면 은행하고 다른 금융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러면 이게 출연금을 모아서 소위 말해서 근로자햇살론에 거의 80% 가까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이라든지 햇살론뱅크라든지 햇살론카드에 쓰는데 근로자햇살론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근로자 햇살론이라는 것은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서 그러니까 보험사라든지 상호금융이라든지 저축은행에서 일정 저신용자한테, 신용등급 낮은 사람한테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이것 일종의 부담금이잖아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입니다.

○**권성동 위원** 부담금이어서 조세의 일종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법인세를 좀 더 부과하는 효과를 거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0.06%로 올렸을 경우에 이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러는데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권성동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은행권에 이익이 엄청 나게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수라든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한 1000억 올린다고 해 가지고 전체 은행권의 금리가 올라가거나 또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만에 하나 이런 이런 호황기를 넘어서 은행권의 경영이 위협을 받고 있고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이 법에다가 그걸 딱 규정해 놨을 경우에 경직성으로 인해서 과연 이걸 낮출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당의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서민 금융을 위한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0.07%로 올려 놨을 때 과연 하방경직성 때문에 이걸 낮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하고 금융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권고사항으로 시행령을 이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경기가 어려워져서 은행 경영이 악화가 되고 위협을 받을 때는 또 어느 정도까지 낮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여지를 주는 것이 나는 좋지 않을까.

법에 딱 규정해 놓으면 이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하한 딱 정해 놓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경기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사이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경기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 사이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 법이 언제 도입됐습니까? 21년도에 도입됐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예, 21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년 한시로 해서, 겉는 건 5년 한시해서 2026년에 끝납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입법 당시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출연요율 상한선만 정해 놓고 하한은 시행령에 위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다른 법률도, 신보라든지 이런 법률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담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세금 같은 거니까 부담금관리 기본법 그런 걸 감안할 때 상한을 설정하고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신보 출연하는 것에서 산중위에서도 유사한 법이 올라갔습니다, 지신보 출연요율 법적 하한을 만들어 주자. 그런데 산중위나 법사위에서 하한을 정하는 것은 좀 탄력성이 없고 경직적일 수 있으니까 상한을 두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李憲昇 위원** 지금 하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현재 한 0.03%로 시행령이 규정돼 있지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예.

○**李憲昇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로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0.06이나 0.07%면? 출연 부담금이 증가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에게는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증가될 우려는 없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큼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계산을 못 한 상태입니다.

○**李憲昇 위원** 지금 자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연간 은행에서 한 800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0.06으로 하게 되면 그 배 정도로 이렇게 출연금이 늘어나는 거지요. 은행 측에 큰 부담은 없을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현재 이익상에서는 팬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탄력적으로 운용, 항상 상황이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말은 그 시행령을 경우에 따라서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필요한 경우에 시행령을…… 그러니까 현재도 시행령을 좀 더 늘리면 사실 많이 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하한을 갖다 명확히 정해 놓으면 그 이하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래서 지금 금융 당국의 입장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하한선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현재 하한선을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저희가 정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더 플렉서블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저도 의견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방경직성 이런 거를 이유로 해 가지고 금리가 좀 유연하게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죽 보면 오히려 은행은 IMF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가장 경기가 안 좋은 시절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보니까 2026년도까지 한시법이지요? 그러니까 2026년이 지나면 이 요율은 다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상한선을 두고 하한선도 둔 상태에서의 유연성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0.06에서 0.1% 사이의 유연성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꼭 짚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금융은 고객의 돈을 가지고 운용해서 이익을 내는 거라서 공공성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지요. 그래서 각종 부과금들을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융위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한계차주하고 한계기업을 갱생시키는 거예요. 다 이미 파산하고 망한 다음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횡재세 얘기도 했던 것이 이거의 연장선 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서민금융계정에다가 출연요율을 높이자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바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그전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금 양보해서 낸 안이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한 한계차주와 한계기업을 갱생시키기 위해서 예금자보호법도 정부 법안으로 21대 때 발의한 것도 있잖아요. 예보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해서 나중에 파산한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갱생을 돋자라는 취지의 법안도 지금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맥을 다 이렇게 해 보면 이 정도 은행에서 수십조의 이익을 내고 있는 데서 1000억 정도 더 추가되는 것을 이자 상승 요인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근거가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금융계가 상당히 비판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최근에도 우리금융의 회장이 불법 대출해 가지고 지금 금감원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금융권의 지배구조가 회장들이 비상임이사들을 임명을 하고 비상임이사들이 회추위의 위원이 돼서 셀프 연임을 막 3선, 4선씩 해 왔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금융기관의 주주의 육칠십 프로가 다 외국인들 아닙니까? 외국인들은 배당만 많이 해 주면 그 지배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거를 악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만 많이 내려고 하는, 그래서 배당 많이 주고 자리 보전하려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금융권의 공공성을 좀 지켜 달라고 하는 요구가 저는 왜 과한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정도는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마지막으로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앞에서 우리가 예금보험료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좀 했는데요. 거기서 0.5% 예보료율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법안 심의를 했는데 그 종전, 만약에 이번에 개정하지 않으면 은행은 0.05%의 예보료율을 그대로 부과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니요. 그 전 법에 적용이 됩니다.

○**천준호 위원** 그 전 법, 그러면 0.08이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650억 원 손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0.05로 저희가 현행을 유지하게 되면 은행은 덜 낼 돈을 더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대로 훨씬 더 많은 이자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이자 증가 부분은 그냥 여러 가지……

○**천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 심의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서민금융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불과 1000억 때문에 대출이자 증가를 걱정하시는 마당에 수천억 원의 금액이 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법안 심사와 관련된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 법적 비용에 신보 등 출연료, 교육세, 예보료 이렇게 있잖아요. 마치 이 서민금융 지원법이 통과되면 무슨 이자율이 폭등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방금 전에 비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럴 거라면 예금자보호법도 다시 돌아가서 예보료율 낮출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공포 마케팅을 하는지 알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저는 물론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상한선만 하는 것도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담금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취지로 한다면 국회가 법률로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하는 게 오히려 법률유보나 조세법률주의에 타당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하한선도 없이 이렇게 정하는 것은 오히려 법률유보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한다면 이게 26년 8월까지인가요, 이 기간이? 26년 10월 8일 까지지요? 즉 출연 의무 기간 자체, 출연 의무를 할지 말지도 그때 다시 정해야 되는 거지요? 요율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출연의무를 둘지 말지에 대해서 존폐를 결정하는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담액도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까 또 궁금해하신 것처럼 이거는 서민금융법 47조 2항 1호 즉 은행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2호, 3호, 4호, 5호는 이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부담도 없다라는 것 좀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면서요 두 법을 공통으로 통과시키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또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은행 출연금 확대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현재 지금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같네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금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냥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서민금융을 정할 때는 서민금융 공급이나 수요 그다음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다음에 현재 재원이 얼마큼인지 이런 요소를 전부 다 고려해서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의 논의 없이 그냥 저희가 0.06이나 0.07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근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탄력적으로, 포인트는 올리면 좋은데, 더 올리는 거는 동의하는데 다만 현재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이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한이 0.06, 0.07인 근거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은행권의 이익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몇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다음에 되면 저금리로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냥 하한을 0.06으로 정해 놓는 거는 좀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저희가 시행령으로 출연요율을 갖다가 확대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창민 위원** 짧게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당혹스럽긴 하거든요.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고받을 때는 지금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실수요자들은 많은데도 제대로 못 한다는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십니까? 왜 그걸 또 근거로 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지금 전체 상황을 파악한 후에 요율을 정해야 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한창민 위원** 쥐가 고양이 걱정하듯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타당하려고 하면 그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하세요. 다른 거에 관련해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표현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서민금융 관련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거 금융위만 모릅니까? 그런 식의 논리로서 지금 이걸 반대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강준현** 한창민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정부 측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저도 발의를 했는데 이게 한시법이지요? 만약에 하더라도 2026년까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한시법입니다. 26년 10월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건 일몰조항 없애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법은 한시법이었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 개정안도 한시법입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한시법이지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몰조항을 죽이는 게 없습니다. 개정안도 한시법입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2026년 몇 월까지예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0월 8일까지입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한시법이니까, 지금 다들 경기도 안 좋고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 다 어려운데 은행에서, 지금 한 은행도 아니고 주요 은행사들이 1년에 한 1000억 정도 올라가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이자가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시법이기도 하고, 요율은 0.06으로 해서 수정해서 가결시키면 좋겠습니다.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예.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저희가 시행령으로 고쳐서 지금 0.03에서 0.45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한 1000억대가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제1금융권은행 그다음에 2금융권이 동등하게 원래 수익자 부담에 맞게 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산업 간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자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햇살론 같은 경우는 2.6조를 공급하는데 이건 다 제2금융권이 이 보증재원을 가지고 공급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 이 보증재원을 이용하는 빙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시행령 올린 것도 거의 1000억대쯤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은행들이 또는 제2금융권이 기여 안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부담금 원칙이라든지 그 기준하고 그다음에 수익자 배분, 수익자 부담 이런 원칙을 감안하면 합리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행령을 고치고 있었던 거고 필요하면 이 체계에서 시행령을 더—좀 더 공헌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저희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 0.03인데요 은행은 0.03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비은행이 0.045로 비은행이 더 크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진짜 마지막으로 유동수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 유동수 위원 지금 금융국장이지요?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산업국장입니다.

○ 유동수 위원 금융산업국장?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 유동수 위원 금융산업국장님, 우리나라 가계신용대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고신용자 대출의 비중이 은행 쪽으로 점점 더 쏠려 간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요?

○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 유동수 위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발언에서 시장의 논리, 수익자 부담 원칙,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구조로 볼 때 지금 산업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시스템을 짜기 때문에 점점 은행 쪽에 고신용자가 집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달비용이 낮고 그래서 NIM이 훨씬 더 은행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거지요.

그나마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자 이런 측면인데 지금 정부 측 내용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비은행 쪽은 0.045로 올리고 은행 쪽은 0.005 올리고,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아주 작은 거에 매몰된다고 그래요, 산업국장이.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서 은행 쪽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더 얘기해 볼까요? 은행의 대주주가 다 외국계고 배당 받으면 다 외국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밖에 설계를 못 합니까? 그렇게 작게, 시장에서 너희들이 보증액 많고 사업비 가지고 보증해서 이익 많이 보니까 너희들한테 요율을 더 높이겠다, 출연비율을 높이겠다 이 정도밖에 사고를 못 합니까, 금융산업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은행으로 돈 다 몰리고 말이지요, 70% 이상이 외국 주주고 배당하면 다 외국으로 돈 빠져나가고 서민들은 갈수록 대출받기 어렵고 점점 더 높은 이율로 가져가야 되고. 근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지 이게 됩니까, 지금?

○소위원장 강준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중 은행만 해당되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은행만 해당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지금 개정안은 은행만 해당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0.06, 0.07이 있는데 0.06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한은 2026년 10월 8일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부칙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국장님, 맞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예.

○소위원장 강준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한시법이고 지금 어려울 때 고통 분담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행 측에서. 여야 간 큰 이견도 없고 하니 관련한 법은 0.06으로 하고 한시법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위원장님, 다만 9페이지 부칙 보시면 시행일하고 경과조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일은 개정안에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과조치는 사실 시행령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납부 주기를 매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경과조치는 따로 안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부분은 한번 결정을 해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강준현 이거를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 시행령 개정 기간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리고 경과조치는 그냥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경과조치를 둘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의결은 앞서 논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권성동 김상훈 김현정 박상혁 유동수 이현승 조승래
천준호 한창민

○출장 위원(3인)

강훈식 김병기 김재섭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구조개선정책관 김동환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유대일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최인호